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9. 28.(목) 09:33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3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2차 및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6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7-35-205)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업자가 신청한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의 18개 지상파 UHD 방송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허가를 의결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 허가임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개국 예정인 광역시 및 평창·강릉지역의 지상파 UHD 방송국의 허가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법인 현황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7년 3월 3일 「광역시 및 평창·강릉지역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하였고, ‘17년 5월 26일 신규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표철수 상임위원님을 심사위원장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평가 결과입니다. 14개 방송사업자의 18개 방송국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0점 이상을 획득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도록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허가 신청

서를 제출한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 모두 기존의 디지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평가 결과, UHD 방송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심사점수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하였으므로 허가함이 적당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허가한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국의 허가조건 및 지역방송사의 특성을 두루 고려하여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허가를 신청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유로 수도권 UHD 프로그램의 수증계를 통해 지역 UHD 방송의 최소 편성비율을 충족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지역방송의 UHD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구현하는 자체제작 UHD 프로그램의 제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의견에 따라 지상파방송사가 신청한 일부 UHD 방송구역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국 및 소출력 중계기 투자계획을 확대한 사업자의 지상파 UHD 방송구역은 인정하되, 지속적인 이행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허가 대상 178개 UHD 방송국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기술적 항목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연주소 설치 일정이 지연되어 종사자 배치 등 일부 항목은 판단이 불가한 사항이며, 방송국의 연주소 별도 설치 의무 여부에 대한 방통위 판단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상파 UHD 방송과 통합 공공망 간 간섭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간섭 초래 시 적극적 해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 허가신청서 보정 결과입니다. 허가를 신청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기제출한 허가신청서의 UHD 설비 확보 및 UHD 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을 확대하여 제출하였고, 허가심사 과정에서 UHD 커버리지 미달 지역에 대한 보완계획을 추가 제출하여, 안정적인 UHD 방송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허가 여부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등이 신청한 18개 UHD 방송국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도 충족하여 허가함이 적당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구역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조건입니다. <1> 허가신청서 최종본에 기재한 사업계획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2020년 25% 이상 편성할 것, <2> 지상파 시청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HD 채널과 UHD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편성할 것(단, UHD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3>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2017년 12월부터 지상파 UHD 방송국을 운용을 개시할 것(연주소 구축이 지연된 KBS는 별도의 허가조건 부가), <4> 이동방송, 양방향 서비스 등 UHD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 <5> 본방송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방송권역의 수신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완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신 불량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지상파 UHD 수신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국 및 소출력 중계기 운영계획 포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6> 다른 무선국의 정상적 운용을 저해하는 혼신 또는 간섭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 없이 비용 부담, 시설자 상호간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것, <7>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호, 인접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영향 파악 등 공익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전파환경 측정·간섭영향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테나 지향 각도 등 송신제원 조정, 간섭 감소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명하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8> 시설자 상호간 기술적 조치로도 혼신 또는 간섭이 해결되지 않아 무선국의 설치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혼신 또는 간섭 원인을 제공하는 측에서 부담할 것, <9>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10>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할 경우 제조사와의 협의내용, 시청자 보호 조치 등의 세부적인 조치 내용을 제출하고 시행할 것, <11> 타 무선국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지체 없이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문제를 해결하고, 조치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12> 다음 항목이 포함된 '지상파 UHD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2019년부터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UHD 관련 전년도 투자실적 및 당해 연도 투자계획, UHD 프로그램의 자체제작·편성 실적 및 계획, 지상파 UHD 관련 공익광고 편성 등 홍보실적 및 계획, 기타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이행계획 등 지상파 UHD 방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 개별 허가조건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UHD 본방송 편성에 준하는 시험방송을 송출하고, 2018년 6월부터 지상파 UHD 방송국 운용을 개시할 것입니다. 다음 공통 권고사항입니다. <1>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UHD 프로그램 자체제작·편성을 확대할 것, <2> 인접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UHD 도입 일정에 맞추어 보조국·소출력 중계기를 설치하여 난시청을 해소할 것, <3> UHD 방송 서비스 관련 민원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 <4> UHD 방송국 추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인력 교육 및 신규 채용 등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각 해당 방송사에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광역시와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평창·강릉지역 지상파 UHD 신규허가 심사를 해 주신 표철수 심사위원장과 사무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방송 그리고 양방향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의 시험평가가 이루어진데다 당초 계획과는 다소 달랐던 수신 불량지역이 나타나서 보조국과 소출력 중계기의 투자계획까지 수립해야 하는 등 심사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통 허가조건이 12개나 되고 공통 권고사항이 4가지나 되는 등 상당히 점검을 받을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허가조건 준수에 대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발언해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표철수 심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KBS가 지역에 연주시설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등등의 이유로 다 완비하지 못해서 6개월간 시험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유로 수도권 UHD 프로그램 수중계를 통해서 지역 UHD 방송 최소 편성비율을 충족하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정된 UHD 프로그램 확대계획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당초 저희가 올 초에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제3기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지역방송사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때문에 제작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수도권 방송사를 수중계하는 프로그램도 지역방송사가 UHD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저희가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제출할 때는 10%가 내년에 해야 할 목표인데 수중계만 다 하더라도 약간 미달하게 9% 정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 심사 와중에 10% 이상 다 수중계하고 그리고 자체제작 부분을 약 0.4에서 0.7%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해 오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최종적으로는 11% 정도는 내년도에 방송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18개 UHD 방송국이 전부다 1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10%도 어렵다고 하다가 10% 이상은 다 지켰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대략 지역민방은 0.4%, 지역MBC는 0.7%를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자체제작을 하겠다, 물론 직접제작은 개별사마다 어렵고 주로 공동제작 형태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대개 수도권의 프로그램 내용이 수중계 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MBC나 KBS 빼고 다른 지역민방들은 경영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경영상의 애로사항이나 지원요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기관의 정책방안이나 DTV 전환사례를 살펴보면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서비스를 위해 자신의 설비투자는 직접 투자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제작은 시청자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원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DTV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미디어정책과에서 중소방송에 콘텐츠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도 내년 예산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확대된다면 이번에는 별도로 해서 UHD 제작 프로그램 항목을 만들어서 UHD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해 주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려운 심사인데 표철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상당히 세밀하게 심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규허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검토해 봤지만 이번 안건처럼 조건이나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많이 붙은 것은 최 근래에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심사위원회의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면 UHD 방송을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또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사무처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UHD 방송의 활성화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UHD 콘텐츠 활성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를 통한 UHD 이것도 성공해야 하지만 UHD 콘텐츠 활성화는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기에 많은 조건을 부과했다시피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시장의 위축, 자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초기에 700MHz 주파수를 배분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적극성에 비하면 지금 UHD 방송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즉, 지상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방통위에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마치 정부가 이것을 주도해서 시장에 안착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 배분부터 최근의 이 사업권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이고, 저희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초기의 계획을 보고 사업허가를 내준 것이지 않습니까? 지상파방송사들의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지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상파들의 역할들을 분명히 부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심사까지 하셨는데 한 말씀하셔야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허가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콘텐츠 제작지원 문제 언급을 하셨고, 또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상파사업자들의 UHD에 대한 책임성·적극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자원 때

문에 지상파사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신에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UHD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 이것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널리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요소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좋겠다는 방송사들의 요청도 있고, 저희들 업무상 그런 것을 활성화하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누차 회의 때마다 강조 드리는 대로 진흥업무가 저희들에게 충분히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흥업무를 방통위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UHD 방송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신규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돼서 세계의 신규방송으로서 신규방송을 리드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해 내면 방송산업 뿐만 아니라 전자산업에도 획기적인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독해서 방송 전자산업을 견인하도록 잘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비율을 우리가 '18년 10%, '19년 15%, '20년 25% 이것을 특히 잘 감독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또 아까 표철수 위원님도 그렇고 고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른 분도 다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방송사들이 미래를 위해서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금들도 방송사들이 마련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지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로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산업과 전자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방송사와 우리 위원회가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7-35-206~21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라> 사업자별 위반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MBC, SBS 등 11개 사업자는 112건에 대해 재난방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재난명 및 재난지역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44건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으로 볼 수 없는 기상정보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역이 해상일 경우 '동해중부먼바다'·'남해서부서쪽먼바다' 등으로 불분명하게 지역이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 12건은 미실시한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지만 그 수준이 미흡하기에 주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송사업자별 위반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재난주관기관의 발표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방송은 재난방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 기준금액은 위반건수당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액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이 가능합니다. <붙임>을 보시면 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사별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과태료 금액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지난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너무 과도하고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경보(동해남부먼바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뉴스에서 특보로 처리하고 또 기상정보에서 소화를 해냈을 때 이것은 재난방송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회의 때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건 정도 걸린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동일 사안입니다. 같은 새벽 5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특히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방송을 중단하고 읽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TV 자막처리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 지역 사정도 어려우니까 영세 지역방송사의 경우는 1건 정도 걸렸으면,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는 매체의 특성상 TV와 동일한 잣대로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주의 조치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태료가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번에 첫 번째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재난 당국과 협의를 할 때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게 재난방송을 하게 되면 남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끊을 우려가 있고 또 공공연히 국민들에게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집중도를 요하는 그런 방송에 자꾸 밑에 자막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당국과 협의를 해서 재난 방송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을 조금 걸러내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오고 2주 만에 다시 재개한 것인데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여기의 제재건수는 당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니

터링 해서 저희에게 보내온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재난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최소화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파 같은 경우 어떤 사업자들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또 어떤 사업자들은 3분의 1 정도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 재난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법률이 있더라도 그동안 엄격하게 시행이 됐느냐, 시행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규제기관과 재난관리기관 그리고 사업자들마다 인식의 정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업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재난방송 실시, 그리고 실시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지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후속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군소방송국들 열악한 상황이고, 또 어찌 보면 큰 방송사들에 비하면 재난방송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인식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에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재건수와 과태료는 이대로 부과되 군소방송사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때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대형 방송사들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MBC 3억 1,000만원, SBS 2억 5,000만원 이 정도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50% 감면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자 모두 50% 감면으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첫 처분사례입니다. 미실시 세부내역을 놓고 방송사업자들이 제기한 문제제기에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석진 위원님이나 고삼석 위원님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을 최대한 감경하는 것, 50% 수준에서 의결주문을 수정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솨우화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민우 교수인데 그 이솨우화가 주는 교훈이 어린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경고 체계가 오류를 발생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재난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들을 모두 잃게 된 것은 두 번이나 방치한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 즉 그것을 방치한 공동체 리더들과 공동체 어른들의 문제이지, 아이들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독특한

해석인데 우리 모두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리이러한 정도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고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10월에 고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들을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재난 카테고리 크게 3개로 잡고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송을 현재로서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신속성에 대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신속성에 대한 기준과 정확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자막이 나올 것인지 특보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자막을 먼저 하고 어떤 경우에 특보로 들어갈 것인지를 상세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말씀하신 고시 개정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재난방송의 신속성, 정확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효과성 측면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사, 즉 방송사업자들 의견도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시청자를 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방송의 용어를 만약에 쉽게 푼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그 의견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석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자막처리가 어려운 라디오 매체의 특성, 특히 이번에 국악방송이나 광주영어방송처럼 녹음방송이 많은 곳에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적절하게 반영이 돼서 시청자들에게는 진짜 재난방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난 전달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방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 위기관리, 재난방송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안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를 하는데 이 건을 다루면서 당초 올라왔던 위반건수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재난방송 본래의 취지를 흐트러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 재난방송의 중요성, 이것은 광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각 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에 대한 시스템을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지를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도 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재난방송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방통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부기해서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앞으로 재난방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엄격하게 실시를 하도록 하되, 이번의 경우에는 처음이고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불명확했다는 점에서 50% 감경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찬성하고, 이번에는 안건 내용 중 감경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50%로 감경한다는 부분을 넣어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주 방통위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대해서 검사·감독권을 발동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료 제출요구 건이 100여건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MBC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사실상의 감사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본격적인 검사·감독권이 발동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 방통위가 한 달째 계속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파업사태를 어떻게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문진에 자료제출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인식은 갖고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동의했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검사·감독권이 발동됐습니다. 발동이 된 법적 근거를 보면 방문진법 제16조와 민법 제37조인데,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을 2002년도 방송위 시절에 받아놓은 것이 발동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송위가 방문진의 주무관청으로서 감독상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난 방문진 설립된 이후 30년간 한 번도 정부기관에서 검사·감독권을 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법리가 충돌했기 때문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002년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검사·감독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방문진에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았습시다. 또 서울대 법대교수에게도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의 결론은 ‘검사·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법률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양자 간에 충돌이 생긴 바람에 그 이후에 실제로는 사실상의 감사, 검사·감독권이 실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방문진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본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대변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 법률자문이 왜 검사·감독권이 없느냐 전해나 하면 검사·감독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무관청이 관할하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면 검사·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는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문진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민법 제37조가 적용돼서 관할 주무관청이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되기에는 충족되지 않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 견해를 어제 자유한국당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밖에도 지난 30년간 검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방송의 독립과 언론 자유라고 하는 그런 헌법적 가치가 더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되면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검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방문진 설립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더구나 언론기관의 관리감독기구에 대한 검사·감독권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리가 충돌하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마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돼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방통위에서 좀 더 재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권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어쨌든 국감 대비도 해야 하니까 내부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님의 성명을 또 잘 봤습니다. 거기에 인용된 두 분의 법률전문가, 한 분은 법학과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님이신데 그분들 의견들도 제가 꼭 읽어봤습니다. 이분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법률해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판례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력 있는 해석도 아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반대되는 법률해석들이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처 그리고 대형 로펌의 해석을 받아봤습니다만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그 근거가 됐던 2가지의 법률자문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법제처와 대형 로펌의 유권해석을 보면 저희들이 대형 로펌 유권해석은 최근에 다 받은 것입니다. 공통되게 나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의 이사 임명권, 정관 변경 인가권, 예·결산 승인권 등과 같은 방문진의 인적·물적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통위는 방문진의 주무관청이 되는 것입니다. 방문진 법 제16조에서 명시적으로 민법 제3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업무에 대해서 검사·감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법의 준용은 방문진법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준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립·허가·취소와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 규정은 적용 가능하다, 이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법률구조공단, 대한변리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경우에도 일부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검사·감독권을 포

함한 일반규정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저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그런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에 대해서 업무 검사·감독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무시한 채 ‘왜 업무 검사·감독을 하느냐?’ 지적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즉, 공영방송의 상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정치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방송장악 문건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공영방송과 그 구성원들을 파괴공작의 대상으로, 탄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공공성을 지키고 구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법에 규정된 방송을 통한 공익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잠깐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방문진이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를 받고 있고 국회 국정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방문진 이사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할 의무까지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방문진에 대한 감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이번처럼 그렇게 MBC의 모든 경영자료까지도 요구해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칫 방송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무관청이 맞습니다. 다만, 방문진이 언론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때는 또 검사·감독권을 행사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자꾸 오해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방문진법 제10조 이사회 규정을 보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MBC를 이야기합니다.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 중에 MBC 경영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마치 ‘MBC의 경영에 자율성·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MBC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그 내용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로서 MBC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관련 자료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지, 지금 새로운 자료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세부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와 제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고삼석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지금이 과연 평상시인가라는 것에 관련된 시점 파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하셨듯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료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파업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혹시 시청자에게 시청권이 방해가 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뉴스를 녹화방송 하는 상황까지 생기는 처지입니다. 이런 속에서 주무관청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여건의 자료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4개 부문의 50가지입니다. 일반 분야를 포함해서 아까 고삼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방문진이라고 한다면, 즉 MBC를 관리·감독하는 이사회로서는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료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정도의 차원인데, 이것이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감사, 그리고 일종의 탄압으로 비추는 것은 조금 다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손상된 공영방송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 아닌가? 방통위가 그 이상까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정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바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의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방침, 또 나아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는 것은 자료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이 제대로 MBC를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언론사의 독립성·자율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장 존중해야 할 가치 중 굉장히 높은 상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사, 특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방송사의 독립성·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검사·감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동안 극도로 자제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한번 논의를 짧게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 시한이 곧 다가오는데 자료제출 요청한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성명을 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의 일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리 예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자세히 몰라서 아까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 3월에 방문진이 당시 방송위원회 측과 관련된 사항을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사항인지 더 여쭙 보려고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에 방송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검사·감독권을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그것이 2002년 7월이고, 그래서 방문진에서 내부적으로 그다음 해 2003년 4월에 제2기 방송위 출범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법무법인 덕수와 또 서울대 법대 김동희 교수에게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공히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검사·감독권을 발동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법률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 뒤에 방문진에 대한 사실상의 감사라든가 검사·감독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2003년 6월부터 제2기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을 했고,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는 당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상의 해석 차이가 있어서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간부들과 직원들 통화해 봤는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률 해석상의 충돌 때문에 그와 같은 권한을 중지한 것인지,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것을 안 한 것인지 제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이와 같이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앞으로 옛날의 방송위원회에 근무하던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원인, 법리가 충돌했기 때문에 접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상위의 가치인 언론사를 직접 들여다보고 또 방송의 독립을 자칫 해칠 수가 있으니까 정부기관에서는 자제를 했다, 이런 것이 더 큰 배경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3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찰막하게 언급을 하면 예산·결산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방통위가 이사와 감사를 임명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정관을 바꾼다면 그것을 인가해야 하는데 그 3가지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감사를 한다, 검사를 한다, 감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3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발언을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주무관청으로서 손을 놓고 있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송 파업 사태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야지요. 다만, 우리가 방송의 독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

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길어지면 여기에서 결론이 날 사항이 당장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존경하는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법률적인 해석의 다른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실무진들도 아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재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종료하시고 실무진의 그와 같은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따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한국 공영방송사들 양사가 공히 파업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가지 공영방송사로서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내부에서의 과도한 통제 문제라든지 또 과도한 인사 문제 이런 것이 원인이 됐고, 최근에 국정원 방송 장악 문건이 그런 뒤 배경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우리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업사태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라도 빨리 종식을 시켜서 방송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문진에 대한 개입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문제는 언론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 저희가 신중하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더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컨센서스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책임자로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고, 저희 실무진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실무자 분들께서도 심도 있게 우리가 이런 비상사태에 개입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식적인 회의 발언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정종기 사무처장님께서 이임식을 오후에 갖습니다. 공직생활로 보면 30년 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고, 또 지난 어려운 시기 방통위 출범, 그리고 또 미래부와 분리돼서 그 어려운 시기에 방통위에 남으셔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기조실장으로 또 사무처장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 작은 제 마음의 표시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모든 논의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방금 고삼석 위원께서 정종기 사무처장님과 관련된 주문을 하셨습니다. 처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 정종기 사무처장

-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없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방송통신

위원회 운영과정을 보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로 많은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방통위가 법률상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많고 또 그러려면 조직 강화 또는 전문성 역량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잘 들으면서 저희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 더 잘 되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 이효성 위원장

- 사무처장님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앞으로도 앞날에 더 좋은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념으로 회의 끝나고 사진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폐회】